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안 번호	19163
----------	-------

제안연월일 : 2019.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8년 8월 29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18.11.1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11월 23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

나.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18. 12. 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64회 국회(정기회) 폐회중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 12.13.)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64회 국회(정기회) 폐회중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13.)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대구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그 발생원인이 항만과 선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는 선박운항, 화물하역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해양환경관리법」으로는 해당 대기오염 배출원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육상대도시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고 있어 항만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규제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선박을 확대하고 친환경 항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항만지역등”을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으로 정의하고, “항만배출원”을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년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측정망을 설치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야 하며,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에 관한 측정결과를 해양환경종합정보망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함(안 제9조).
-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선박배출 규제해역을 지정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속도 미만으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항만대기 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반드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12조).
- 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3조).
- 사. 항만관리청, 항만하역사업자 및 부두운영회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 아.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자. 친환경 항만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선박소유자에게 수전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18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지역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 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나. 항만지역등 중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

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항만사업자”란 「항만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을 받아 항만지역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항만관리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만관리청을 말한다.

9.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관리 및 항만배출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 항만지역등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등)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 내용이 이 법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미세먼지
6. 오존(O₃)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 계획
4. 항만지역등 대기질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배출규제 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친화적 선박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보급에 관한 사항
7.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

지역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등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설치 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정보망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에 관한 사항, 제2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조사결과의 반영·활용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배출원의 관리 및 친환경 항만 구축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 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 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각기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기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저속운항해역(이하 “저속운항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1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항만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항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이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된 하역장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하역장비
2.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동차의 운행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출입하는 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① 항만관리청 및 항만사업자는 쾌적한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육상전원공급설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이하 “수전장치”라 한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출입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 항만사업자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등) ①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 선장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지 않은 자
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하역장비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제한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